

중장년 경계선지능인 노동실태 및 정책연구 중간공유회



자료집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일하는시민연구소

내일의 증서는
변화의 은평

중장년 경계선지능인 노동실태 및 정책연구 중간공유회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일하는시민연구소



12.17 (화)
pm 3:00



서울시50+
서부캠퍼스
4층 두루두루강당

시간	내용		
14:40-15:00	Welcome Zone 운영		
14:50-14:59	주요 참여자 배석 안내		
15:00-	귀빈 소개 및 개회		
15:05-	환영사	강화연 센터장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15:10-15:40	발표	김종진 소장	/일하는시민연구소
		윤태영 연구원	/일하는시민연구소
15:40-16:10	나눔	송연숙 이사장	/사단법인느린학습자시민회
		신정미 복지사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박선영 팀장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16:15-16:20	현장발언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눔	
16:20-16:25	마무리 및 기념촬영		
16:30-	기념품 배포 및 환송라인 구성		

발표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김태영 연구원

중장년 경계선 지능인 노동실태 및 정책 연구 중간 공유회 자료

2024. 12. 17

연구기관 :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책임연구원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공동연구원 : 윤태영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연구위원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이은주 사회보장연구원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 경계선 지능인	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2. 연구방법 및 구성	6
제2장 국내외 다양성신경인 및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제도	8
1. 해외 다양성신경인 및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제도 - 프랑스, 독일	8
1) 프랑스 논의와 제도	8
2) 독일 논의와 제도	18
2. 한국 다양성신경인 및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제도 - 기존 연구, 법제도	32
1)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검토	32
2)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제도화 현황	37
제3장 서울 및 은평지역 경계선 지능인 노동실태 - 설문조사	44
제4장 서울 및 은평지역 경계선 지능인 노동실태 - 면접조사	46
제5장 결론 - 요약 및 과제	48
참고문헌	50

[1차년도 연구 범위: 2024년] 1장, 2장

[2차년도 연구 범위: 2025년] 3장, 4장, 5장

제 1 장

서론 - 경계선 지능인 문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1장 | 서론 - 경계선 지능인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형태로 몇몇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과 정책, 사업, 센터 운영 등을 하는 곳들이 있음. 이는 사회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2020년 이후부터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아동, 청소년기 교육문제로 접근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
-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서울시 조례 규정, 2020.10). 사회적으로 교육에 초점을 두면서 ‘느린학습자’로 지칭되기도 했으며, 고용과 일자리 문제 관련 사업들도 하나, 둘 알려지고 있음.¹⁾
- 우리 사회에서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전체 인구의 13.59%(69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함.²⁾
- 그러나 **경계선지능은 협의의 의미이고 학계나 해외에서는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이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자폐스펙트럼, 주의력결핍과잉

1) "이젠 손님 응대 자신 있어요"...'고용 사각지대' 느린학습자, 구직 도전기(아시아경제, 2024년 9월 4일, <https://v.daum.net/v/20240904082635643>)

2)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1~6학년 35만6247명 중 초등 경계선 지능학생은 1만6414명으로 조사됐다(뉴시스, 2024년 8월 19일, <https://v.daum.net/v/20240819145712319>). 보건복지부(2023: 39, 42)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는 '지능지수가 70이하'라고 규정(보건복지부(2023).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보건복지부).

행동장애(ADHD), 난독증, 난산증, 투렛증후군, 아스퍼거증후군 등 비전형적 신경 인지 발달 상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용어임.

- 최근 발표 연구들은 **신경다양인(신경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전 세계 인구의 20~30%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이처럼 많은 사람이 신경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됐음.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신경다양인이 가진 장점이 일터에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음.
 - 예를들면 자폐스펙트럼인은 디테일에 강하고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능함. ADHD인들은 그들의 풍부한 창의력을 일터에서 혁신적 사고로 발전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영국, 유럽의 기업들(Microsoft, JP Morgan, IBM 등)은 신경다양인을 고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기업문화를 만드는 효과를 보고 있음. 이처럼 신경다양인이 갖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취업과 일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영국, 미국에서는 신경다양인들의 일터 내 경험 연구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신경다양인이자 인종적 소수자 인터뷰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교차적 고정 관념(intersectional stereotyping)과 차별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음.

- 한국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결과(2024.12.09.) ‘경계선 지능인’ 도서 및 서적·자료는 549건이며 학술논문은 130건, 그 외 도서 218건, 간행물 183건 등이고, ‘느린 학습자’ 도서 및 서적·자료는 249건이며 학술논문은 77건이며, 학술논문은 77건, 그 외 도서 98건, 간행물 71건 등임.
 -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과 부정적인 가정환경, 모친의 신경심리(neuropsychological), 정신건강(mental health) 문제를 가지고 있음. 취업이 어려움은 물론 고용이 되더라도 평균 이하의 임금에 노출되고 직장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Peltopuro, et al., 2014).³⁾

- 2024년 시작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 연구(송지원, 2024)에서는 인적자원관리 분야 내 다양성 및 신경다양성연구 의제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기업 현장에 복잡한 교차적 특성을 가진 이들을 위한 포용적이고 맞춤형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⁴⁾
- 반면 한국에서는 초기 가족이나 지인 등 이해당사자들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음.⁵⁾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느린학습자에 초점을 두어 교육문제에 방점을 두고 2020년 첫 지자체 조례 제정(114개 : 경계선지능인 84개/교육청 15곳 포함, 느린학습자 30개) 이후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는 전담기관 설치 및 사업('23-'25, 24년 24.5억원)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2024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2024.7.6.)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음. 정부 자료에도 '경계선지능'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IQ 71-84*)으로 인식되나, 명확한 법적 기준정의는 부재하다고 규정하면서, 제한적으로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의거, 국민 전체의 13.59%(약 697만명)로 추정되는 정도로 언급함.
- 한편 민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청년재단 같은 곳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재단은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밈 센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함께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일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임.⁶⁾ 주요 사업은 상·하반기 걸쳐 100명의 구직 희망 청년을 선발한 뒤 직무경험과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임.⁷⁾

3) 경계선지능 청년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보호 요인(preventive factors)으로는 교육, 사회적 접촉(social connections), 그리고 개인적 삶의 질 제고의 노력이 필요함(Peltopuro et al., 2014).

4) 이 연구를 통해 신경다양성이 인종 배경과 교차하여 채용, 성과평가, 경력개발 과정에서 인종과 관련한 일반적인 고정 관념을 증폭시키거나 희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음. 흑인, 라틴계 신경다양인의 경우, 인종적 부정적 고정 관념이 신경다양성을 통해 강화되는 반면, 아시아 신경다양인은 신경다양성 특성이 '모범적인 소수자'라는 고정관념과 충돌하여 이들에게 새로운 스트레스와 압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신경다양성 행동은 일터 내 지배적인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피하고자 신경다양인은 정체성 관리 전략을 사용하여 나름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음

5) 최근 성인 느린학습자 20~50대만 320~360만명 정도 규모로 이야기하면서,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고용과 지원(성인 느린학습자 일자리취업지원, 의무고용법 통과시켜라! 느린학습자 공공일자리 100~300만개 만들어라) 문제를 제기한바 있음.(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https://cafe.naver.com/chiara20>, 느린학습자 시민회카페 <https://cafe.naver.com/slowlearnersnetwork>)

6) "우리도 출근하고 싶어요"...어느 청년 느린학습자의 절규(한국경제TV, 2024년 9월 2일, <https://v.daum.net/v/20240902100927515>)

7) 참여 청년은 장애인용 구직욕구 진단검사 등을 토대로 희망 직종을 탐색하는 단계부터 거친다. 2단계에서는 전문 강사가 대인관계와 시간 관리 방법을 교육함.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자기관리 기술을 터득하는 과정이다. 이 중 구직 의향이 강한 청년 14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6곳의 사업장에 배치돼 5주간의 직무 경험을 하게 됨. 이들이 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는 직무지도원도 배치되며, 진로 탐색부터 구직 교육, 직무 경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됨.

- 따라서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연구는 서울 및 은평지역 다양성신경인 중 경계선지능인의 노동실태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기존 연구들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적 차원의' 지원이 초점이라면,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전후 및 일터에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이나 문제점 등을 포착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경계선 지능인 노동실태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함. 첫째, 국내외 경계선지능인 개념과 규정 및 구분, 법제도 및 정책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해외(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했음.
- 둘째, 경계선 지능인의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정리하고, 서울 및 은평지역 노동시장 실태와 특징(설문, 면접)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향후 지자체 차원의 제도와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탐색적 차원에서 도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기존 국내외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와 해외 주요 논의 현황(프랑스, 독일)을 검토할 것이며, 서울 및 은평지역 이해당사자 간담회(유관 단체, 시설)와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해외 주요 논의는 일반적 특징과 논의 및 지원 정책(법제도, 사업)을 중심으로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며, 은평지역 주요 이해당사자 및 유관기관(사회복지 및 센터 등) 간담회와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함.

2) 보고서 구성

- 연구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2장은 국내 경계선지능인 법제도 및 정책(법률, 조례, 정책 사업)을 정리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신경다양인 및 경계선 지능인의 논의와 제도를 정리했음.
- 3장은 서울 및 은평지역 경계선 지능인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4장은 경계선 지능인 노동실태 면접조사 결과(심층면접조사)를 분석할 것임. 끝으로 5장에서는 주요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임.

제2장

국내외 다양성 신경인 및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제도

1. 해외 다양성신경인 및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제도 - 프랑스, 독일
2. 국내 다양성신경인 및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제도

제2장 | 국내외 다양성신경인 및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제도

1. 해외 다양성신경인 및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제도 - 프랑스, 독일

1) 프랑스 논의와 제도

(1) 신경다양성의 개요

가. 범위

- 프랑스는 신경다양성 정의를 신경발달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인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행동장애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신경다양성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신경다양성의 종류로는 자폐증을 비롯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실독증(독서장애), 통합운동장애, 언어장애, 과잉예민증, 계산능력장애, 지적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신경다양성인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그룹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신경다양성 기준이 매우 세밀해지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장애들이 추가되는 요인 때문이기도 함.

나. 인구 현황

- 프랑스 보건고등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신경발달에 문제가 있는 인구는 총 인구의 5% 정도이며, 매년 약 35,000명의 신생아가 이런 증상을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중 자폐증상은 총신생아의 0.9%~1.2%로 매해 약 7,500명이 태어남.
- 보건고등위원회는 20세 미만 청년 중 약 10만명이 신경다양성 증상 중 하나인 자폐 증상이 있으며, 총 인구 중 60만명이 자폐 증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편 과잉행동증상은 청소년 아동의 5%, 성인의 2.5%이며 지적장애는 약 1%로 추정하고 있음.

다. 장애판정에 대한 논의

- 프랑스 정부는 신경다양성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정 주 요인인 장애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장애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정서적, 정신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신경다양성은 여러 가지 기능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장애로 인정함. 그러나 신경다양성인들은 단지 장애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이 일반인과는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유연성이 더 필요함.

라. 고용에 대한 논의

- 신경다양성인의 노동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노동능력이 평균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탁월하게 발달한 능력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음. 대표적으로 정상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경다양성인들은 대부분 생산력향상, 창조성 등임. 특히 자폐증의 경우 140%의 생산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경다양성인들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대부분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음. 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실업율은 80%이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10%에 불과함.

- 신경다양인의 고용에 대한 논의 지점은 기업의 인식과 이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제 여부임. 대부분 기업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준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임.

(2) 신경다양성 법제도 수립과 특징

- 프랑스는 신경다양성을 장애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경다양성 관련법은 ‘장애인 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장애인 권리와 기회평등, 사회참여, 시민권보장법 평등 기회 보장법, 장애인 노동권 보호법 두 가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 권리와 기회평등, 사회참여, 시민권보장법 평등 기회 보장법(Loi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⁸⁾
 - 2005년에 제정된 장애인 보호법으로 신경다양성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가장 주요한 법
 - 장애인의 이동, 주거, 교육, 고용, 교육, 문화, 여가, 건강 등 모든 분야의 지원 법적 근거. 신경다양성인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어 이법에 근거하여 보호와 지원 받음
 - 이 법률은 프랑스 장애인들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특히 장애인들의 차별금지 보호를 더 강조
- 장애인 노동권 보호법⁹⁾
 - 장애인 노동권 보호가 명시된 노동법(Code du travail)은 1958년 11월에 수립되어 1975년 개편에 이어, 2018년 현재의 법으로 개편되었음.
 - 노동법에는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이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건 차별을 금하는

8) <https://handicap.gouv.fr/la-loi-du-11-fevrier-2005-pour-legalite-des-droits-et-des-chances>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00809647>

9)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06189802#:~:text=La%20qualit%C3%A9%20de%20travailleur%20handicap%C3%A9%20est%20reconnue%20par%20la%20commission,action%20sociale%20et%20des%20familles.>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고용, 임금에서의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신경다양성인의 차별금지도 포함되어 있음.

- 2018년 9월 개정된 노동법인 '미래직업선택의 자유권'에는 장애인노동자들의 고용의무 조건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중임.

○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자격 인증(Reconnaissance de la Qualité de Travailleur Handicapé (RQTH)¹⁰⁾

- 이 제도는 '사회활동과 가정법 146-9'에 근거하는 것으로 인증서를 통해 장애인 노동권을 보호 지원하는 것임.

- 장애인들의 고용과 노동권을 인정함으로써 직업활동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단, 모든 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해 이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장애인 노동자 인정서에는 장애인 노동 인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노동조건 내용도 포함

- 근무시간 조정
- 장애에 적합한 근무환경조성(장애에 맞는 사무기기나 사무용품 교체)
- 근무내용 파악을 위한 적절한 지원(일반동료의 동반, 직업활동 적응을 위한 실습등)
- 공기업,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내용 등.

(3) 신경다양성 지원 정책¹¹⁾

가. 국가차원의 지원정책

- 국가 차원의 신경다양성 지원은 주로 차별금지와 포용 그리고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신경다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은 장애인 지원정책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차별금지와 평등을 위한 고등위원회(La 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10)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50>

11)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1891-quelle-politique-pour-emploi-des-personnes-handicapees-oeth-rqth#:~:text=Apr%C3%AAs%20la%20loi%20n%C2%B0,1%20l'aide%20au%20reclassement%20professionnel.>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

- 이 위원회는 2004년 12월 차별금지법을 위한 법이 제정이 된 후 설립되었음. 위원회의 주 역할은 모든 국민들의 차별금지와 평등을 보호하는 것으로 신경다양성인 교육기회의 차별과 고용차별에 대한 법적 지원과 보호의 역할을 함.

나. 공공부문 지원정책

① 고용지원정책

- 프랑스 고용지원정책 역시 신경다양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포함되어 있음. 아래 소개되는 내용은 장애인 대상정책으로 신경다양성인도 대상에 포함됨.

a) 장애인 의무고용 (L'obligation d'emploi de travailleurs handicapés:OETH)

- 1987년에 제정되어 당시 의무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었고, 2018년 '미래직업선택권'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강화되었음.
- 20인 이상 근로자 기업은 최소 전체근로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2022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3.5% 공기업은 5.45% 고용하고 있음.

b) 노동 통한 장애인지원 시설 (Etablissements et Services d'Aide par le Travail:ESAT)¹²⁾

- 1954년에 설립된 '장애인 노동을 통한 지원센터(les centres d'aide par le travail :CAT)'가 2005년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 목적은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통한 고용지원과 사회통합.
- 100% 장애인을 모집하여 이들의 의료사회지원과 교육지원, 직업교육과 실습, 채용까지 운영하는 기관임(한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과 유사). 시설 재정은 지방정부의 지역보건청(Agence Régionale de Santé:ARS) 재정으로 운영됨.

12)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54#:~:text=C'est%20la%20Commission%20des,6%20mois%20d'a%20n%20s%20c%20e%20t%20%20C%3%8%9%20s%20a%20t%20>
<https://www.sanitaire-social.com/annuaire-handicap/etablissement-et-service-d-aide-par-le-travail-esat#:~:text=Etablissement%20et%20Service%20d'Aide,1%20658%20%20C%3%A9tablissements%20%2D%20Sanitaire%2DSocial>

- 현재 프랑스 전국에 1,658개의 시설이 있으며 170,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200개 이상의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자격은 장애판정을 받은 이로 시설 이용은 1년으로 재등록이 가능함.
- 이곳에서는 파트타임이나 전일제로 활동 가능하며 다른 직업활동과 병행 가능함. 시간제, 전일제 보수는 최저임금의 55.7%에서 110.7%로 금액은 시간당 6,49유로 -12,90유로 수준이며 주당 노동시간은 35시간임(임금은 장애수당과 중복 가능)
- 장애인 인권과 권리 위원회는 장애인으로 취업이 되지 않았거나 장애인 적용 기업 (EA) 수혜자가 아닌 장애인을 이곳으로 안내하여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c) 장애인 적용기업 (Une entreprise adaptée :EA)¹³⁾

- 한국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같은 개념의 시설이지만 일반기업의 성격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전체 노동자의 55%를 포함하여야 함(공공, 민간 모두 해당).
- 장애인의 첫 고용기업의 역할로 직업교육을 마친 장애인들의 직업활동과 직업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월 임금은 최소 최저임금 이상으로 2023년도 1,398유로 이상임.

d)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기금운영협회 (L'Association de gestion du fonds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Agefiph)

- 이 협회는 신경다양성인을 포함한 장애인고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협회는 신경다양성인의 취업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의 50% 이상이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직업교육의 수준이 일반인의 직업교육 수준보다 낮음. 직업활동을 위한 이동수단이 미흡하고, 구직 활동이 일반인 보다 낮은 편임.

e) 성인장애수당의 개편 (La réforme de l'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 장애인들은 직업활동을 하게 되면 급여 외에 활동보상금이 지급되는데 2005년도에 제정되어 최저임금의 1.1배까지 지급됨. 2011년부터는 최저임금 의 1.35배로 증가.

13)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53>

- 2024년 상한액은 1 766,92 유로로 이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2024년 평균 장애 수당은 월 1,016유로 임.

프랑스 신경다양성 질환(자폐증) 연구와 지원

- 자폐증과 신경발달장애를 위한 국가 전략(La stratégie nationale autisme et troubles du neurodéveloppement (2018-2022)¹⁴⁾
- 가족, 관련협회, 관계자, 행정가, 지역공동체, 건강전문가, 의료사회전문자 등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계획(재정 약 5억 5,000만 유로)
- 주 내용은 자폐증은 물론 신경다양성의 범주를 모두 포함하여 공공정책안이 장애인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5개 주요주제와 100개의 세부적 내용으로 구성
- 중앙정부는 건강, 고용, 교육지원 중점, 지방정부는 각 지방의 지역보건청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내용을 홍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활동 접근성 높임

② 민간협회 지원

a) ‘신경다양성-프랑스 (La neuro diversite- france)’¹⁵⁾

- 2019년에 설립된 민간 협회로 신경다양성인들의 차별에 대응하는 행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
- 신경다양성인들은 대부분 장애인 고용지원정책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협회는 신경다양성인을 위한 협회로 신경다양성의 기본권리는 물론 노동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주 활동은 미성년 신경다양성인 교육과 성인 신경다양성인의 직업활동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함.

* 신경다양성 연구와 의료사회학적 포럼 주제 및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 서적 소개, 신경다양성인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정보 제공, 기업, 민간단체와 파트너를 맺고 협력 운영 등

b) 다양성헌장 (Charte de diversité)¹⁶⁾

- 다양성 헌장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지양하는 모든 기업에게 제의하는 참여문서

14)

[https://handicap.gouv.fr/la-strategie-nationale-autisme-et-troubles-du-neurodeveloppement-2018-2022#:~:text=Les%20chiffres&text=Les%20troubles%20du%20spectre%20de%20l'autisme%20\(TSA\)%20repr%C3%A9sentent,adultes%20sont%20autistes%20en%20France.](https://handicap.gouv.fr/la-strategie-nationale-autisme-et-troubles-du-neurodeveloppement-2018-2022#:~:text=Les%20chiffres&text=Les%20troubles%20du%20spectre%20de%20l'autisme%20(TSA)%20repr%C3%A9sentent,adultes%20sont%20autistes%20en%20France.)

15) <https://laneurodiversite-france.fr/>

16)

<https://www.charte-diversite.com/accueillir-la-neurodiversite-en-entreprise-presentation-et-bonnes-pratiques/>

이자 이를 주관하는 기관의 명칭이기도 함. 이 문서는 몽테뉴 연구소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2004년에 만들어졌음.

- 2004년 10월에 33개 기업으로 시작하여 대기업에서부터 소기업까지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경다양성인을 위한 고용기회 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c) 자폐증 자료, 정보 센터 (Centre de Ressources Autisme Île-de-France : CRAIF)

- 신경다양성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장애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자폐증을 위한 협회. 자폐 진단은 물론 정부의 지원정책 정보제공, 치료와 동반등 자폐증 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자폐관련 전문 잡지도 발간하고 있음

(3) 민간 개별기업 사례

① 프랑스 기업 오랑주(orange) 통신회사의 신경다양성인을 위한 팀(Neuroteam) 결성¹⁷⁾

- 2021년부터 신경다양성인들의 기회평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경다양성인 동료들을 동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음.
- 3년 전 신경팀이 결성되기까지는 직원들의 관심이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직원 대부분이 관심을 갖고 신경다양성 동료를 동반 지원하고 있음.
- “신경팀(Neuroteam)”의 목적은 신경다양성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기업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신경다양성인의 개별능력(자료분석이나 사이버안전 등)을 근무에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는 지원을 하고 있음.
- 기업에 특별채용된 신경다양성인의 기본적인 직업교육을 이 신경팀에서 실시함. 교육 과정에서 발견하는 신경다양성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개별 교육 실행하고 모든 직원들을 위해 자가진단표를 만들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함.

② 시멘스(Siemens : le Centre Être Handicap)¹⁸⁾

17)

<https://www.francetravail.org/accueil/actualites/2024/nous-apprenons-a-transformer-la-difference-en-un-e-richesse-profitable-a-toute-lentreprise.html?type=article>

18)

<https://www.charte-diversite.com/accueillir-la-neurodiversite-en-entreprise-presentation-et-bonnes-pra>

- 본사 내에 장애센터(le Centre Être Handicap)를 설립하고 장애직원을 전담 지원하고 있음. 센터의 목적은 본사 내에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교육지원함으로써 다른 동료와의 협력은 물론 직무능력을 높이는 것임.
- 매일 약 30명의 동료들이 신경다양성을 포함한 장애동료들의 근무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활동은 개별지원으로 장애정도에 적합한 직업활동에 대한 교육과 동반활동.

민간기업의 신경다양성인 채용 사례	
- 다양한 사회문제 연구기관의 장애인과 신경발달장애인의 고용연구과제¹⁹⁾	
=	신경다양성인 고용조건 명확한 제시
=	평가방법 차별화
=	기업내 신경다양성인 동반 시스템이 없을 경우 신경다양성인이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와 연결하여 이들을 고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

③ 베인페 파리바(BNP Paribas)은행

- 신경다양성인을 고용할 시 명확한 고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이 은행은 신경다양성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채용기준과 활동참여 기준이 일반직원 기준과 다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④ 소프트웨어 편집회사(l'éditeur de logiciel SAP)의 채용방법

- 신경다양성인 채용시 이력서와 같은 서류평가를 하지 않고 바로 직접 면접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함. 즉, 서류평가 없이 면접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직접 실전에 투여 하여 실전 직업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⑤ CGI (IT 기업)

- 신경정신과 연구소와의 협력 지원으로 직원들의 증상을 익명으로 진단해 줌. 만일 진단이 신경다양성으로 판명이 되면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자격 인증(RQTH)'을 받도록 지원하고 근로환경을 조절해 줌

[tiques/](#)

19)

<https://theconversation.com/comment-les-entreprises-peuvent-elles-emboucher-et-soutenir-les-employes-neurodivergents-223874#:~:text=Tout%20d'abord%2C%20les%20entreprises,d'%C3%A9viter%20toute%20interpr%C3%A9tation%20erron%C3%A9e,https://www.charte-diversite.com/accueillir-la-neurodiversite-en-entreprise-presentation-et-bonnes-pratiques/>

3. 소결

- 프랑스 정부의 신경다양성 지원 및 고용정책은 장애인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반면, 경계선에 있는 그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들의 특별고용 정책이 조금씩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프랑스 정부의 신경다양성인 고용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개념에서 확장, 개선되고 있음.
 - ▶ **평등성**: 프랑스사회가 주장하는 평등성에 근거하여 이들의 사회적 포용과 통합,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같은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 **다양성**: 신경다양성인들의 개별성을 포용하는 개념을 다양성으로 확장하여 이들의 특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직장 동료들의 동반활동).
 - ▶ **유연성**: 신경다양성인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근무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사무기기나 물품 역시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마련하는 유연적 근무환경을 제공(재택근무, 유연한 근무시간) 등임.

-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신경다양성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필요로 하는 점을 좀 더 정확히 판단하여 이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동료는 물론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 독일 논의와 제도

(1) 학습장애 개요

가. 경계선지능과 학습장애 논의 배경

- 독일은 ‘경계선지능(Borderline intellektuelle Funktion, BIF)’을 국제질병분류기준(ICD)에 따라 의학적으로 진단 하지만, 사회적 지원 대상을 지칭할 때는 경계선지능인 대신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Menschen mit Lernbehinderung)’ 명칭을 사용함.
- 학습장애 용어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학습장애를 학교 및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물·사회학적 상호작용 및 축적의 산물(multifaktoriell bedingte biosoziale Interaktions- und Kumulationsprodukte)²⁰⁾’로 보고 있음. 낮은 지능지수가 진단 기준이 되는 경계선지능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행동문제, 언어 문제, 청각 장애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학령기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규 교육과정이 완료 되더라도 학습과 일상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며, 노동시장 참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분야 및 법률에 따라 학습장애를 사회법(Sozialrecht)과 학교관련법(Schulrecht)에서 각각 ‘Lernbehinderung’과 ‘Lernbeeinträchtigung’을 각각 사용함²¹⁾.
- 2024년 12월 기준,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홈페이지 및 공식 문헌에서 학습장애(Lernbehinderung)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정의한 바는 없으며, 사회법 제9권(SGB IX)의 규정을 따름.

20) Horst Baier: Öffentliche Meinung und sozialer Wandel / Public Opinion and Social Change.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1982, ISBN 978-3-531-11533-7.

21) 본 연구는 경계선 지능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통합 과정 중 학습장애(Lernbehinderung)와 관련된 사회법에 근거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학습장애는 ‘Lernbehinderung’을 의미하며, 이외 Lernbeeinträchtigung, Lernschwierigkeit의 용어는 괄호에 원어를 표시함.

나. 진단 기준 및 판정 절차

- 학습장애²²⁾ 여부는 지능검사, 국제질병분류기준에 따른 임상적 관찰, 직업재활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방고용공단(BA) 전문가가 직업심리적 서비스(Berufspychologischen Service)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심리적성검사로 판단 가능함.
- 지능검사 따른 진단 :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통해 지능지수가 70에서 85사이에 있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으로 분류하며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함.
- 국제질병분류(ICD-10-GM²³⁾) 따른 진단 : 학습장애는 발달장애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ICD-10-GM F81로 분류함. 세부적으로는 학습 기술의 복합장애(F81.3), 기타 학습 기술의 발달 장애(F81.8)로 분류함. 경계선 지능은 R41에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증상 및 징후’로 분류함.
- 심리적성검사(PSU²⁴⁾) : 연방고용공단(BfA)에 소속된 재활상담가(Rehaberater)²⁵⁾가 재활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재활을 지원함. 심리적성검사는 학령기(대개 9학년)에 실시하며, 아래 기준²⁶⁾에 따라 재활상담가가 평가서를 작성함.
 - 재활 필요(Rehabedart) : 대상자가 학습장애를 겪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특별 지원이 필요한가.
 - 훈련의 준비도(ausbildungsrief) : 대상자가 직업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추가적인 직업 준비 조치(weitere berufsvorbereitende Maßnahmen)가 필요한가.
 - 추가적인 직업 준비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떠한 준비 조치가 필요한가.
 - 특정한(혹은 적절한) 직업 능력과 대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일치하는가.
 - 대상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스템이 필요한가.

다. 인구 현황

22) 독일의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인 학습장애는 의학적 진단에 따라 구분된 범주가 아니므로, 미국의 정신질환 및 통계편람(DSM)에 해당 범주가 없음.

23)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WHO에서 국제표준으로, 시점에 따른 국가 간 질병현황을 비교하는 기준이 됨. 2019년 ICD-11(11차 개정판)이 채택되고 2022년 1월에 발효 되었으나, 현재 독일은 연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소(BfArM)가 발행한 ICD-10 독일어판인 'ICD-10-GM(German Modification)'을 사용함. ICD-10-GM은 사회법전 제5권 질병보험(SGB V: Krankenversicherung) 제295조에 따른 의료급여 청구에 필요한 진단 기준으로 사용됨

24) 공식 명칭은 Psychologische Eignungsuntersuchung.

25) 공식 명칭은 '직업재활과 참여를 위한 상담가(Beraterin oder Berater für Berufliche Rehabilitation und Teilhabe)'.

26) 학교품질 및 교육연구를 위한 국립연구원(Staatinstitut für Schulqualität und Bildungsforschung München), 심리적성검사 용어 해설.<https://www.isb.bayern.de/schularten/foerderschulen/lernen/sdw/psychologische-eignungsuntersuchung-psu> (최종 접속 일자: 202 4.12.1..)

-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의 규모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으며, 학자에 따라 전체 인구의 2.3%에서 3.3%로 추정함.
- 학습지원연방협회(Lernen Fördern-Bundesverband)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독일 전체인구 약 8,130만명 중 29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5%가 학습장애를 겪고 있음.²⁷⁾.

(2) 학습장애 관련 규정

가.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SGB III: Arbeitsförderung)

- 사회법전 제3권(SGB III) 제19조에는 고용 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규정함. 사회법전 제3권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이때 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장애(Lernbehinderung)를 가진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
- 연방고용공단의 재활 기술지침(Fachliche Weisung²⁸⁾)에 따르면, 학습장애는 법률이나 의학적 진단으로 규정된 장애의 범주가 아니며, 직업심리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주임. 사회법전 제3권 제19조의 학습장애에 대한 판단은 재활상담가의 개별적인 사례조사(Einzelfallfeststellung)에 전적으로 기초하며, 연방고용청의 내부 정보시스템(VerBIS²⁹⁾)에 문서화함.

나.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SGB IX: Rehabilitation und Teilhabe)

27) Lernen Fördern(2020) Statistik zur Lernbehinderung: Wie viele Menschen können in Deutschland zum Personenkreis der Menschen mit Lernbehinderung gerechnet werden? 12.dezember.2020. https://lernen-foerdern.de/wp-content/uploads/2023/02/LERNEN-FOERDERN_Eser_Statistik-zur-Lernbehinderung_12.12.2020.pdf

28) Bundesagentur für Arbeit(2022) Fachliche Weisungen Reha/SB Drittes Buch Sozialgesetzbuch – SGB III § 19 SGB III Menschen mit Behinderungen. 6쪽. https://www.arbeitsagentur.de/datei/dok_ba014659.pdf

29) 공식 명칭은 연방고용공단 조정·상담·정보시스템 Vermittlungs-,Beratungs- und Informations system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VerBIS는 직업훈련 대상자와 실업급여 가입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방고용공단의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직업훈련과 노동시장 배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 채용 정보와 지원자의 프로필을 표준화하여 기록하고 상호비교(매칭)하거나, 실업 통계(Arbeitslosenstatistik)작성의 근거로 활용함. (출처: 연방고용공단 용어사전 ‘VerBIS’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DE/Navigation/Grundlagen/Definition/en/Glossar/Glossar-Nav.html?lv2=2018278>)

behinderter Menschen)

- 2001년 제정된 사회법전 제9권(SGB IX)은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차별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제1조). 학습 장애는 장애로 분류 되지는 않으나, 사회법전 제9권에서 장애인(Menschen mit Behinderungen) 뿐만 아니라 ‘장애 위험에 처한 사람(Behinderung bedrohte Menschen)’까지 포괄하여 일부 서비스를 제공함.
- 법 2부³⁰⁾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사회참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화를 위해 의료 재할(제109조), 고용급여를 통한 노동생활(Arbeitsleben)참여(제111조), 교육참여(제112조), 그리고 사회참여(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명시함. 이 지원에 대한 요구를 판단하기 위해 법 제118조 제1항에서 ‘학습과 지식 응용(Lernen und Wissensanwendung)’을 판정 기준으로 삼음.

다. 장애인평등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 2002년 제정 및 시행된 장애인평등법은 연방 차원의 공법 분야에서 장애인의 평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 및 예방하고, 사회속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와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법 제4조 ‘장벽 제거(Barrierefreiheit. 베리어-프리)’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외부의 지원 없이 다양한 시설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장애인평등법 조항에서 주요 초점으로 삼는 내용으로, 연방당국의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 확립 및 차별 금지(제7조), 건축물 진입 및 이동 접근성 확립(제8조), 수화 및 기타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장치를 사용할 권리(제9조), ‘베리어-프리 정보 기술 규정(BITV 2.0³¹⁾)’에 따른 정보기술 및 웹사이트 접근성 확보(제12a조), 투표소 접근성 및 투표용지 템플릿 개선을 통한 참정권 보장(제15조).
- 법 제11조 ‘이해가능성 및 쉬운 언어(Leichte Sprache, LS)’규정에서는 지적 장애인

30) 법 2부의 공식명칭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기결정적 삶의 운영을 위한 특별급여(Besondere Leistungen zur selbstbestimmten Lebensführung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Eingliederungshilferecht)임.

31) 공식명칭은 Barrierefreie-Informationstechnik-Verordnung 2.0임. 장애인평등법(BGG)에 근거하며,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적으로 지원되는 관리 프로세스, 그래픽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 모든 정보기술 솔루션(IT solution)의 접근 및 이용에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방 수준의 공공행정사무에 적용되며, 설계 및 적용에 대한 기술표준을 정의하는 주무부서는 연방노동사회부(BMAS)임(출처: 독일 연방정부정보기술위원회 법률과 지침 <https://www.barrierefreiheit-dienstkonsolidierung.bund.de/Webs/PB/DE/gesetze-und-richtlinien/bitv2-0/bitv2-0-node.html>(최종 접속 일자: 24.12.2)

및 정신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에 대한 비용을 관할 당국에서 부담 하도록 함. 현대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쉬운 언어(LS)버전의 홈페이지 화면 및 브로슈어를 제공함. 이 규정은 장애인, 학습장애를 겪는 사람 뿐 아니라, 모국어가 독일어가 아닌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라. 연방참여법(Bundesteilhabegesetz, BTHG)

- 연방참여법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존 법률의 규정을 조정 및 변경하기 위한 조항법(Artikelgesetz)임. 특히,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개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 시행은 2023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이루어 지며, 이 법에 따라 사회법전(SGB) 제9권(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제11권(사회적 수발보험), 제12권(사회부조)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및 사회참여에 관한 지원의 통합 개편이 이루어짐.

-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해고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장애인을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 학습 장애에 대해서는 재활, 직업 훈련, 고용알선 프로그램에만 참여할 수 있음.
-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도 참여 가능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보충적 자립 참여상담(Ergänzenden unabhängigen Teilhabeberatung, EUTB)’의 그 설치 근거가 연방참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부터 총 6천 4백만 유로의 연방기금이 지원됨.

[참조] 독일의 연방참여법의 목표와 수단 도식화



* 자료 : 독일 연방사회노동부(BMAS). https://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Teilhabe/grafik-massnahmen-ziele-bthg.pdf?__blob=publicationFile&v=2

(3) 학습장애 지원 제도

가. 연방정부, 공공부문

① 특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 통합 전문 서비스(Integrationsfachdienst)

- 연방사회노동부가 주무부서이며, 연방고용공단(BA) 및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이 운영하는 통합 전문 서비스는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담 및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비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수행하기 어려운 견습생에게 ‘이론과정이 축소된 전문 실무자 직업훈련 (theoriereduzierte Fachpraktiker-Ausbildung, 이하 전문 실무자 훈련)을 제공함.
- 전문 실무자 직업훈련의 주요 분야는 농업, 원예업, 노인 돌봄, 가사서비스, 소대업, 창고 관리업임. 일반적인 직업훈련과는 다르게, 직업훈련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작업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습장애를 가진 직업훈련생이 훈련장(작업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읽고 는 것’을 들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장 내 관리자가 ‘과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과 ‘일상적인 업무의 루틴을 형성하는 것’, ‘작업의 흐름을 픽토그램(pictogram)으로 보여주기’, ‘간단한 언어(LS)로 일일 일정을 보내거나, 휴 대전화를 통해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제안함³²⁾.

② 통합과 포용, 주요보상사무소 연방 협의회(BIH³³⁾)

- 통합과 포용, 주요보상사무소 연방 협의회는 연방 및 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24개 기관의 협의체임. 사회법전 제9권을 설치 근거로 하며, 중증 장애인의 노동생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임. 1919년에 설치된 주요보상사무소(Hauptfürsorge stelle)를 뿌리로 두고 있으며, 1974년 중증장애인법(Schwerbehindertengesetz)시행 이후부터 장애인의 포괄적인 재활 기능을 담당하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³⁴⁾.

③ 장애인 작업장(Werkstat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WfbM)

- 일반 노동시장(allgemeine Arbeitsmarkt)에 진입하여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필요에 맞춤형된 작업장을 설치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법전 제9권 제219조가 설치근거임.
- 일반적인 노동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인 작업장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이 가능함. 공인된(anerkannt) 작업장은 720개 정도 있으며, 고용된 사람은 약 315,000명임. 재원은 고용공단(Agentur für Arbeit),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sträger)에서 지원함
- 작업장의 핵심과제. 작업장은 일종의 재활시설로, 적절한 훈련은 제공하고, 근로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회복,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심리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32) Bildungsketten 홈페이지.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직업훈련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Wie Ausbildung und Beschäftigung von Menschen mit Lernbehinderung gelingen kann)” <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themen/inklusion-in-ausbildung-und-beruf/interview-ausbildung-bei-lernbehinderung.html>(최종 접속 일자: 2024.12.2.)

33) 공식 명칭은 Die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 und Inklus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34) 한국의 장애인고용공단과 유사한 기관

- 직업훈련은 사회법전제9권 제57조에 따라 24개월동안 제공되며,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회사 인턴십, 외부 작업장에서 훈련과 일을 수행함.

○ 작업장 근무 따른 보수(Entgelt)는 사회법전 제9권 제221조에 따라 고정 요율로 지급되는 기본급여(Grundbetrag), 작업량이나 작업 품질 따라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는 개별 강화 급여(individueller Steigerungsbetrag), 업무 성과와는 별도로 장애에 따른 재활 과정에서 정액 지급되는 노동 촉진 수당(Arbeitsförderungsgeld)로 구성됨.

- 작업장에 고용될 경우, 근로자는 노령연금, 산재보험, 질병보험,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되나, (일반적으로)실업 보험 대상에서는 제외됨.

④ 보충적 자립 참여상담(Ergänzenden unabhängigen Teilhabeberatung, EUTB)

○ 연방참여법(BTHG)시행에 따른 보충(추가) 상담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재활 및 통합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함. 현재 독일 전역에 500곳 이상의 상담소를 운영 중임.

- 장애인과 장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노동사회부(BMAS)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보충적 자립 참여상담(EUTB)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사회법전 제9권 제32조 근거).

- 신청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내 쉬운 언어 설명 및 수화설명(Gevärdensprache)을 병행하며, 자기결정 참여 용어 사전(Wörterbuch der selbst bestimmten Teilhabe), 뉴스레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함.

○ 동료 상담(Peer-Beratung)은 장애 당사자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 상담자가 되어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조언함. 2020년 기준, 보충적 자립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자 2,280명 중 1,596명으로, 전체 상담자의 70%가 장애 당사자 혹은 장애인의 가족인 '동료(peer)'임³⁵⁾.

35) EUTB 홈페이지 "EUTB 맥락에서의 동료상담의 상담기법(Die Beratungsmethode des Peer Counseling im Kontext der EUTB)"<https://www.teilhabeberatung.de/artikel/die-beratungsmethode-des-peer-counseling-im-kontext-der-eutb> (최종 접속 일자: 24.12.2)

[참조] 보충적 자립 참여상담(EUTB)의 동료상담 픽토그램



* 자료 : 보충적 자립 참여상담(EUTB) 홈페이지(teilhabeberatung.de)

⑤ 공공기관 정보 ‘쉬운 언어(Leichte Sprache, LS)’ 설명 및 로고 부착

- 쉬운 언어는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진 언어이며, 주로 브로슈어나 홈페이지 설명문 등 서면(written) 형태로 제시됨. 쉬운 말은 장애인평등법(BGG) 제11조 및 정보 기술 규정(BITV 2.0)을 근거로 하지만 원문을 대체하거나 법적인 효력은 없음.
 - 쉬운 언어는 맞춤법 규칙, 서체 및 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을 포함하는 ‘고정된 규칙 세트(festen Regelwerk)’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칙은 2006년에 설립된 단체인 ‘쉬운 언어 네트워크(Netzwerk Leichte Sprache)’가 제시한 규정을 따름.

- ‘이지 투 리드(Easy-to-Read)’ 로고는 특정 문서 혹은 웹페이지가 읽기 쉬운 정보를 위한 유럽 표준³⁶⁾을 따른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나타냄. 문서 표지나, 홈페이지상에 로고를 표시하여 이를 표시함. 로고 사용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읽도록 한 뒤 이해하기 쉬운지 확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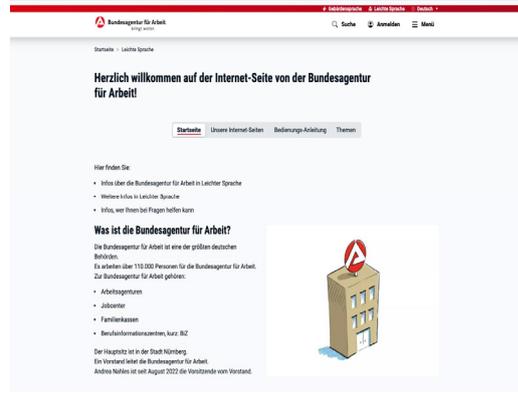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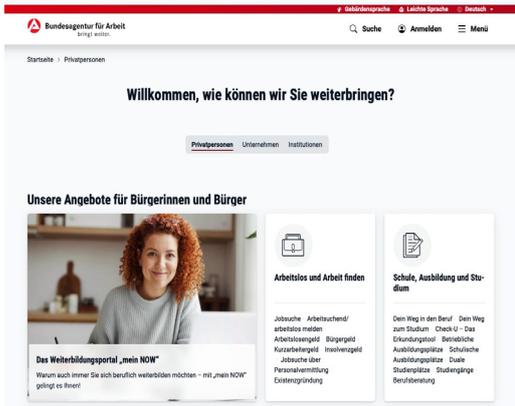
36) 표준의 공식 명칭은 European standards for making information easy to read and to understand 홈페이지 <https://easy-to-read.inclusion-europe.eu/de/>

[참조] ‘이지 투 리드’ 로고(좌) 및 읽기 쉬운 정보를 위한 유럽 표준(우)



* 자료 : 이지 투 리드 유럽 표준 홈페이지(<https://easy-to-read.inclusion-europe.eu/de/>)

[참조] 연방고용공단 사이트 홈화면 : 일반버전(좌), 쉬운 언어 버전(우)



* 자료 : 연방고용공단 홈페이지 시작화면 (<https://www.arbeitsagentur.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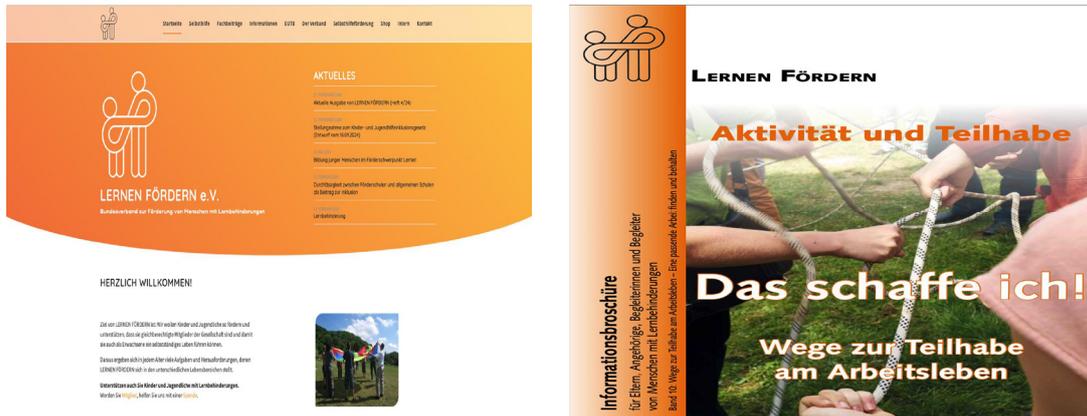
나. 민간 지원기관 - 협회, 자조집단, 보조기구 사이트

① 학습지원연방협회(Lernen Fördern-Bundesverband)

- 1968년 설립된 학습지원연방협회는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의 설립을 돕는 일과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일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 연방 및 지역 협회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000 명이며, 11개의 지역 협회가 구성됨³⁷⁾. 학습지원연방협회는 당사자의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방

규모의 네트워크를 제공함. 일년에 네 번 정기간행물을 출간하며, 자조모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브로슈어를 비정기적으로 발간함.

[참조] 학습지원연방협회 홈페이지(좌), 자조모임 활용 브로슈어-노동생활 참여(우)



* 자료 : 학습지원연방협회 홈페이지(<https://lernen-foerdern.de/wp-content/uploads/2023/01/SH10-Arbeit.pdf>)

② 쉬운언어네트워크(Netzwerk Leichte Spra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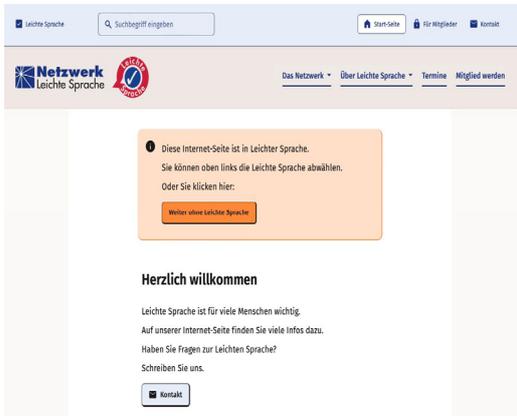
- 2006년 설립된 ‘쉬운 언어 네트워크’는 독일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LS)로 번역 및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번역가 및 평가자(Prüfer), 연구자와 정치인 등의 개인 회원과 기관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비영리 협회로 전환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약 300명의 회원이 있음.
 - 협회는 쉬운 언어가 없이는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기 어려운 인구가 독일 내 약 7백만 명 가량 있다고 추산하며, 쉬운 언어가 ‘언어 휠체어(sprachlichen Rolli)’와 같은 보조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설명함.
- 쉬운언어네트워크는 연방노동사회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쉬운 언어 사용에 관한 규정(Regeln) 만들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표준을 제시함: 쉬운 언어를 위한 규정 (Die Regeln für Leichte Sprache), 일상 언어의 단어 구분에 관한 정보(Information zur Worttrennung in Alltagssprache), 쉬운 언어로 된 단어 구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en zur Worttrennung in Leichter Sprache), 회의 규칙(Regeln für Tagungen).

37) 협회 홈페이지 제공 <https://lernen-foerdern.de/verband/#leitbild>

- 쉬운 언어 규정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쉬운 언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며, 공식적인 대명사(Sie)를 사용하여 독자를 성인으로 언급할 것
- 짧은 문장 사용, 한 줄에 한 문장 사용, 한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진술
- 능동태를 사용하며, 조건문을 지양할 것
- 문장은 주어+서술어+목적어 형태로 구성할 것
- 동의어 사용을 지양하고, 합성어는 나눌 것

[참조] 쉬운언어네트워크 홈페이지(좌), 쉬운 언어를 위한 규정집(우)



* 자료 : 쉬운언어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www.netzwerk-leichte-sprache.de/l/s/>)

③ 행동 사람(Aktion Mensch): 복권 수익 기금 사회적 프로젝트 지원 기금

○ 소셜복권(Soziallotterie)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행동 사람’ 기금은 독일에서 가장 큰 민간 사회 자금 기관임. 기관의 비전은 ‘다양성이 당연시되는 장벽 없는 사회(Eine barrierefreie Gesellschaft, in der Vielfalt selbstverständlich ist.)’임

-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적 프로젝트 중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업훈련,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직원 교육 비용의 공동지원(통합 회사 VisionGmbH 사례)
- 구호기관 및 무료급식소 등에서 자원봉사, 인턴십 취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구호단체에 대한 현금지원(Kreisdiakonieverband 사례, 3년 간 20만 유로 지원),
- 쉬운 언어 사용을 통한 사무실 업무환경 조성(Lebenshilfe Kreisvereinigung Rastatt/ Murgtal 사례, 5년 간 40만 유로 지원)
-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장애인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기술 사용 능력을

높여 일반 노동시장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 교육(Lebenshilfe Kreisvereinigung Rastatt/Murgtal, 1년 간 7,000유로 지원)

다. 개별기업 사례

① 장애인 통합회사 닌테그라(Nintegra) 38)

- 스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둔 ‘닌테그라’는 직원 20명 중 절반 이상이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 통합회사³⁹⁾임. 통합회사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인 동시에, 향후 직원들이 언젠가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② 장애인 일상생활 및 취업 정보 제공 포털 유니크 유니티드(Unique United)

- ‘유니크 유니티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여행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과, 교육, 직업훈련, 취업과 같은 영역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스타트업임.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탐색기능 및 튜토리얼, 쉬운 언어로 된 커버레터 및 이력서 템플릿, 매뉴얼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유니크 유니티드’의 설립자인 Kleemeyer는 학습장애 당사자임. 고용공단은 Louis를 장애인 작업장에 배치하려 했지만, 첫 번째 노동시장(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였음⁴⁰⁾.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업무 시 동료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래와 같음.

- 편견없애기, 눈높이로 이야기하기
- 작업 지시서를 구두나 디지털 서면으로 제공하며, 앱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음.
- 길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 대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기.
- 평등한 기회: 모두를 참여시키고 다음 단계를 논의

38) “지붕 위의 켈러(Keller auf dem Dach)”, chrismon. 2016. 03.23. 기사 <https://chrismon.de/artikel/2016/32130/learnbehinderte-im-arbeitsleben-auf-dem-bau-patrick-keller>

39) 통합회사는 인력의 최소 25% 최대 50%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됨.

40) <https://karriere.myability.jobs/karrieretipps/karriere-mit-lernbehinderung>

- 그가 업무를 위해 사용한 보조 도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문법 교정을 위한 ChatGPT
- Eye-Able : 텍스트를 쉬운 언어로 번역하는 인공지능
- 긴 텍스트를 읽기 위한 텍스트 리더 앱 (MS 제품 활용)
- 구글 렌즈를 통해 종이에 있는 텍스트를 불러오거나 번역함
- 회의를 기록하고, 자막을 표시하고, 요약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2. 한국 다양성신경인 및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제도 - 기존 연구, 법제도

1) 경계선 지능인 논의와 검토

- 한국 경계선 지능인이나 느린학습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4-6학년),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음.
- 국내 ‘경계선 지능’ 혹은 ‘느린 학습자’는 정신의학 분야의 30년전의 기준 즉,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IQ 71~84에 속하여 표준편차-1에서-2사이에 해당자’(미국정신의학회, 1995)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⁴¹⁾

[표 2-1] 경계선지능인 해외 주요 국가 진단기준과 지원 방법 요약

국가	진단기준	지원방법
네덜란드	DSM-5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지적장애와 동일한 서비스 받을 수 있음
미국	DSM-5	경계선지능인으로 인해 근로나 기초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서비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벨기에	AAIDD	자폐 범주 성장 장애 등의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작업교육훈련 포함)
캐나다	AAIDD	자폐 범주 성장 장애 등의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스페인	DSM-5	경계선지능인 교육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프랑스	DSM-5	지적발달장애 등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서비스 받을 수 있음
독일	ICD-10-GM	다른 장애와 학습장애(경계선지능인 포함) 구분하고,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주 : 정신질환 및 통계편람(DSM-5),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 정의(AAIDD), 국제질병기준 10차 개정 독일어판(ICD-10-GM)
 자료: 박광욱 외(2022), 『경계선지능인 청년의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경제사회인문연구회, p.72 내용에서 프랑스, 독일 내용 연구진 추가.

- 기존 관점은 아동·청소년기 이행과정의 발달과정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은 학습적인 부분에서 정상 지능 범주 학생들과 차이를 보이며, 느린 학습자들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예: 언어, 수, 개념)을 다루는 능력이 제한적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추론 능력도 평균적인 학생들에 비해 부족하다”(G.Lokanadha Reddy등, 2013:17)에 초점이 있음.

41) G. Lokanadha Reddy, R. Ramar, A Kusuma.(2013, 박현숙 옮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느린학습자의 심리와 교육』,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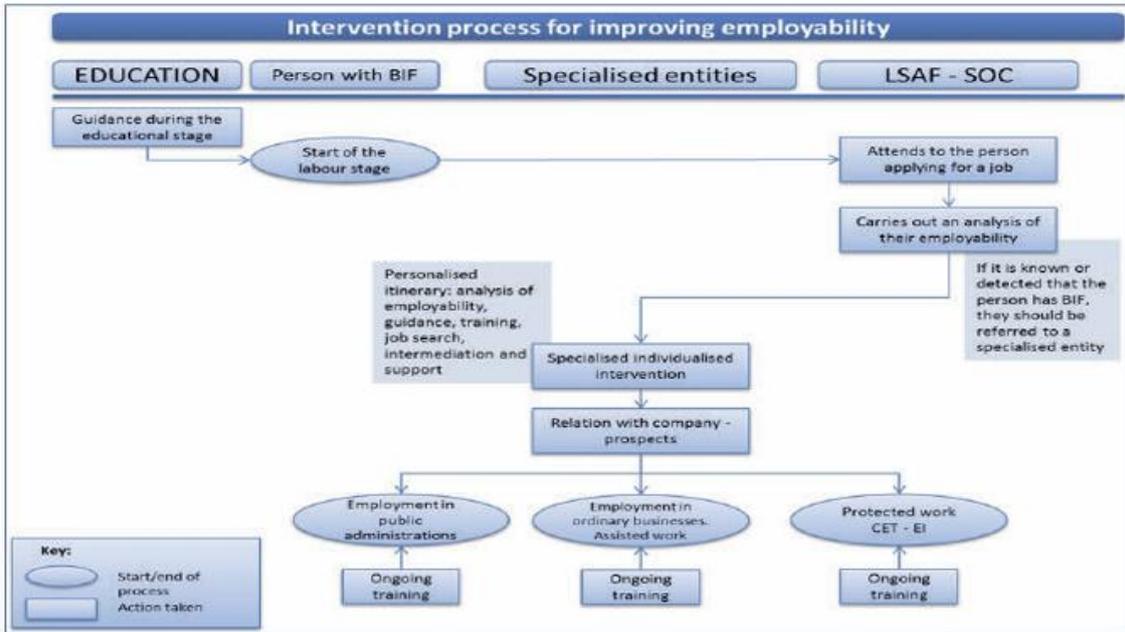
- 국내 경계선 지능인(130건) 및 느린학습자(98건) 관련 학위논문도 228건이나 됨. 국내 연구들을 보면 주로 아동 혹은 청소년, 청년기 대상으로 주요한 사례들이 많음. 국내 기존 연구 대부분 아동이나 초등 과정의 학생에 초점을 두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청년기까지 다소 넓혀지는 정도임. 이것도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상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
- 해외 사례 및 연구에서도 대부분 경계선지능인 문제는 포괄적으로 ‘장애와 비장애’ 구분을 둘러싼 각 국가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았음. 해외 국가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의 진로탐색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국은 아직 평등의 관점에서 혹은 보편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기존 한국의 연구(박광욱 외, 2022:이미지·정세정, 2023)에서도 정책 제안으로 고용 및 지원서비스가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이는 연구조사 자체가 쉽지 않고 취업 과정에 있는 노동자 사례 대상자 양적조사(설문조사 등)가 여의치 않기 때문일 것임.

[표 2-2] 스페인 경계선지능인 개념적 프레임 개요(성명서, 2007)

합의점	합의 내용
1	경계선지능인 특정 공중 보건, 교육, 법적 관심이 필요함 메다 건강상태로 71-85 사이의 기능으로 인해 다양한 인지적 장애와 활동 및 사회참여의 제한 등을 포함한 기능적 결함을 가짐
2	경계선지능인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취약성을 가지므로 조기 발견, 정신병리학적 평가, 특정 학습 잠재력 평가 등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3	경계선지능인 집단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로 고려할 때 정신병리학적 평가가 중요하며, 그 결과는 인지적 프로파일과 통합되어야 함
4	아동청소년기의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적 결함이 아닌 또래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교육과정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정의해야 함
5	경계선지능인은 학교, 직장 및 사회적 적응 촉진을 위한 지원의 요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
6	법적, 행정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요구되는 지원은 적절하지 않기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노력이 요구됨
7	정의, 평등, 다양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의 조기 선별 및 평가 등의 목표를 건강, 사회, 고용, 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8	건강을 비롯한 사회, 교육, 노동, 법 등의 여러 분야에서 경계선지능의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 연구가 요구됨
9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계선지능 교육이 요구됨
10	여러 부처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협업이 증진되어야 함

* 출처 : 박광욱 외(2022), 『경계선지능인 청년의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경제사회인문연구회, p.63 재인용.

[그림 2-1] 스페인 경계선지능인 고용서비스 제고를 위한 중재절차



* 출처 : 박광옥 외(2022), 『경계선지능인 청년의 정책 소의 실태 및 정책 개발』, 경제사회인문연구회, p.70 재인용.

- 기존 연구 중에서 노동 및 고용 관련 연구는 2건(박광옥 외, 2023: 이미지·정세영, 2023)이 있을 정도로 매우 빈약한 상태임. 그나마 박광옥 외(2023)는 전체 실태 중 청년 대상 실태 중 일부 취업이나 일 관련 문항 정도를 파악한 상태임. 그나마 이미지·정세영(2023)의 연구가 취업 및 고용 관련 면접조사로 진행된 상황임.
- 박광옥 외(2023) 조사에서 주요 내용은 “일 머리와 눈치 없음으로 점철되는 평가” 제시되었는데, 기대되는 능력 중 미미한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능력으로 표현됨. 더불어 한없이 무력해지는 복잡한 일, 모든 순간 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시달림의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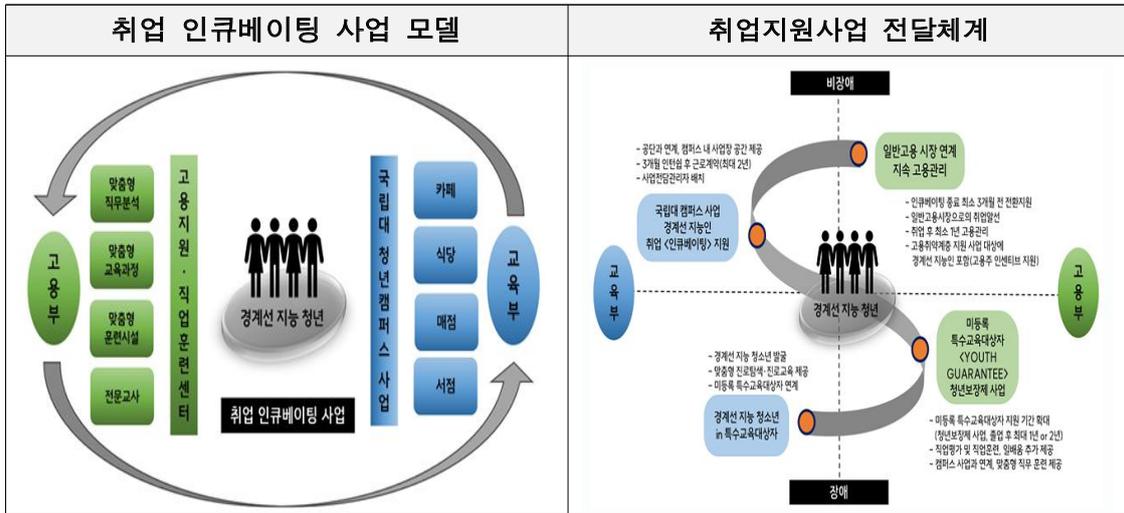
[표 2-3] 한국 경계선지능인 주요 영역별 기존 연구 특징(2022-2023)

	청년 욕구*	정책 실태**	법제도	노동시장***
연구 주제	경계선지능 청년의 실태·욕구 분석	경계선지능 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비교 연구	경계선지능인 대상 고용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저자 발간	임성은(2023) 2023년 제25권 제4호 경기연구원	박광옥 외(2022) 협동연구총서 22-80-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민기채(2023) 2023년 제25권 제4호 경기연구원	이미지·장세영(2023) 고용연구 2023-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상	청년(25세 이상)	청년(19-34세)	광역 지자체	청년(22-37세, 면접)

	청년 욕구*	정책 실태**	법제도	노동시장***
	서울&경기지역	전국	10개	성인(18세 이상: 설문)
방법론	기존 문헌, 선행연구 면접조사(청년 5명, 부모 2명, 전문가 3명, 복지 관계자 2명, 기관/시설 관계자 7명)	기존문헌, 선행연구 해외(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설문조사(203명), 면접조사(기관 종사자 6명), FGI(부모 6명)	기존 문헌, 선행연구 10개 광역 지자체 조례 비교 검토	기존문헌, 선행연구 면접조사(청년 22-37세, 9명)→ 취업 유형별 3명, 설문조사(74명, 18세 이상 성인), 간담회(14명)
주요 내용	경계선지능인 미인지 학령기 이후 사회경험 자신 한계와 실패경험 때문에 자존감 하락/포기	고용, 주거, 교육, 권리구제, 정신건강 중 고용지원(48.4%) 가장 핵심. 단순 정보제공&취업정보 이외의 개인별 접근, 단계적 지원(직업교육, 현장배치, 직무지도, 근로지원 등), 장애인고용서비스 확대	조례 내용적 체계 '정도' 7개 구성요소별 구분	정보 및 직업역량 부족, 사회적 관계 어려움, 공적 지원 아닌 사적 지원 다수. 주위 소통 및 관계 형성 어려움 존재. (사회적 상호작용 부정적 문제) 진로탐색/직업훈련과 사회성 훈련 시급, 생애주기 정책 마련 필요성

주 : * 당사자 인터뷰 질문은 1)인지계기, 2)가정 및 주변환경, 2)미래 희망사항, 3)사회지원 필요성, 4)정책 요구
 ** 경계선 지능 의심증상 1)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려움, 2)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문제해결에 어려움, 3) 문제의 여러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4) 융통성있게 문제를 다루지 못함, 5)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동성 억제 행동, 6)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작업 기억에 유지하는데 어려움, 7) 복잡한 상황에서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8) 사회경제적 불안정, 9) 부적절한 돈 사용, 10) 속기 쉽고, 자발적인 의사결정 어려움
 *** 당사자 인터뷰 질문은 1)인지 계기, 2)학교 재학시 진로설계 및 직업훈련경험, 3) 학교 졸업 후 자립/취업 경험, 4) 성인기 자립/취업 필요 지원, 5) 취업 후 사직 경험, 6) 직장 유지 필요 지원

[그림 2-2] 한국 경계선지능인 취업 및 고용지원 서비스 체계



* 자료 : 이미지·정세영(2023), 『경계선지능인 고용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167 재인용.

○ 이미지·정세영(2023)의 연구가 취업 및 고용 관련 청년 9명 대상(3명 취업, 1인 아르바이트, 1인 실직, 4명 무직) 면접조사로 진행된 연구결과 보고서임. 연구조사에서

는 경계선지능인의 △일반 특성(4개 항목, 7개 질문), △고용지원 실태 및 어려움(2개 영역, 8개 질문), △고용서비스 지원 요구(4개 영역, 12개 질문)로 되어 있음.

-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정책과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임([그림 2-2]). 이는 법률 제정 이후 종합정책과 지원이 마련되고 공공과 민간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임.

[표 2-4] 2025년 서울 및 은평지역 경계선지능인 노동실태 조사(안)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계선지능인 면접조사 결과 카테고리			2025년 서울 및 은평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검토(안)
구분	영역	문항	문항
경계선지능인 특성	이질적 특성	지능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특성	
	지능, 학습	자신의 이해(미인지) 기초학습	
	사회적응능력	사회성과 공감능력 심리, 정서적 상태, 욕구	
	직업역량	업무 이해 및 능력 장애와 비장애 직업능력	직장생활
고용지원 실태 서비스	취업 고용유지	취업 장벽 문제 직장생활(버티기) 제한된 직업직군(바리스타) 비전, 단기성	취업 과정 취업 지원 과정 직장생활, 노동조건 이전 직장
	지원체계	장애등록/미등록 사이 지원 지원 공백 여부 보호자 노력, 지지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법과 제도	실효성 여부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학령기 조기 교육, 개입 진로탐색, 직업능력 평가, 상담 맞춤형 교육과정 및 훈련 대인관계, 사회성 강화	사회관계(물적, 인적 자원)
고용지원 요구	고용환경 구축	취업적합 직무, 직군 개발 취업지원 모델 개발 사업주 인센티브 보호자/관리자 교육	
	고용유지 지원	심리상담, 멘토링 지원 약물복용 등 의료복지 지원 취업후 적응지도 배치	협업과정 직장생활
	고용 실태 차별, 대우	고용 직장생활	이전 직장생활(아르바이트 포함) 계약, 지원과정, 수습 과정(3개월) 직장생활(노동조건, 인사배치) 상사, 동료관계
차별 및 침해 부당대우		노동조건(임금, 시간 등) 업무내용 협업과정	
괴롭힘 감정노동 등		동료 상급자 고객, 이용자 기타	

2)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제도화 현황

(1) 중앙정부

○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를 정책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2022년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⁴²⁾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함.

○ 중앙정부는 2024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 ⁴³⁾을 발표, 정책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개념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체계를 구축함.

- (현행 사업)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지원사업 시행 중

[표 2-5] 현행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수행주체	주요 사업
중앙정부 (복지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 시설보호아동 대상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교육부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내 기초학력부진학생(경계선 지능 학생 포함) 지원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 관련 조례 제정(조례 수 114개) ◦ 서울특별시 : 경계선 지능인 전담 기관 설치('22), 종합계획('23-'25), 연간 예산 편성(24.5억원, '24)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경계선 지능 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20~) ◦ 청년재단 : 잠재성장 청년 채용 프로젝트('24~) ◦ 아이들과 미래 재단-유니클로 : 천천히 함께 캠페인('23~) ◦ 대교문화재단 : 느린학습자의 동반자 '선을 넘는 거북이' 캠페인('22) 등

* 자료 : 정부 발표자료(관계부처 합동, 2024), 검색 등을 통해 연구진 재구성

- (문제 진단) 현행 지원체계는 조기발견 및 실태 파악 곤란, 보편적인 정밀진단 도구 부족, 실태조사 부재로 구체적인 현황 및 정책 수요 파악 어려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부족(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 (지원 방안) 경계선 지능인 발굴 강화와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❶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 학부모용 선별도구 개발, 학령기 단계 조기 발견(교육

42) 교육부 보도자료(2022.1.13.),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교육회복 추진 현황 점검 및 2022년 추진계획 점검 및 논의'

43) 관계부처 합동(2024.7),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사회관계장관회의 2024-6.

부), 경계선 지능인 실태 조사 실시(복지부)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영유아기 : 아동발달 서비스(교육부),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여가부·교육부)
- 학령기 :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성,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교육청), 심리정서·학업·진로직업 등 경계선 지능인 특화형 교육 제공, 교원 전문성 강화(교육부), 부모 자조모임 조성 지원(지자체 등), 교원 및 보호자 대상 생활법률 등 교육(법무부·교육부), 학교 밖 경계선 지능인 지원(여가부·교육부),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시설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복지부)
- 성인기 : 경계선 지능인 직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연구(고용부), 사회성 및 생활기술 등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지자체, 대학 등), 사회관계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등(공통)

③ 인식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캠페인, 지역 생활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 중앙정부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은 조기 발굴과 조기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인기보다는 영유아기, 학령기 대상 교육 정책이 중심임. 더구나 성인기 대상 정책은 청년 대상 정책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인기 연령대를 포괄하는 고용 및 노동 환경에 접근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2) 지자체 제도화 현황

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과 특징

- 경계선 지능인 관련 최초로 제정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0.10.5., 제7739호)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례 제명에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조례가 지속 증가하여 2024년 11월 기준, 114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함.

-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15개의 광역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 제정, 광역자치단체와 광역교육청 소관 조례는 총 30개 제정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은 54개 지역에서, ‘느린 학습자’ 관련 조례는 30개 지역에서 제정(단, 대전시 동구는 두 조례를 모두 제정)

○ 지자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과 ‘느린 학습자’를 혼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련 조례는 최초 조례인 서울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평생교육법 근거 조례는 지원 대상의 연령대를 전체로, 초·중등교육법 근거 조례는 19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근거하고 있는 상위 법에 따라 정책 대상의 차이 발생

○ 이처럼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는 확산 추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한 가운데 용어마저 ‘경계선 지능인’, ‘경계선 지능 학생’, ‘느린 학습자’ 등으로 혼용하고 있고, 다수의 조례가 정책 대상의 ‘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경제생활 및 노동시장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실정임.

- 대다수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의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교육 지원에 초점. 다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을 언급한 조례 일부 존재

[표 2-6]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4년 11월 기준)

지역	경계선 지능(인) 조례(84개)	느린 학습자 조례(30개)
서울	서울특별시(1) / 서울시 교육청(1) / 서울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중랑구(10)	서울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10)
부산	부산광역시(1) / 부산시 교육청(1) / 부산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3)	부산시 강서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6)
대구	대구광역시(1) / 대구시 교육청(1) / 대구시 동구, 서구, 수성구(3)	-

지역	경계선 지능(인) 조례(84개)	느린 학습자 조례(30개)
인천	인천광역시(1) / 인천시 교육청(1)	인천시 남동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4)
광주	광주광역시(1) / 광주시 교육청(1) / 광주시 남구, 서구(2)	-
대전	대전광역시(1) / 대전시 교육청(1) / 대전시 대덕구, 동구(2)	대전시 동구, 유성구(2)
울산	울산광역시(1) / 울산시 교육청(1) / 울산시 중구(1)	울산시 동구(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1) / 세종시 교육청(1)	-
경기	경기도(1) / 경기도 교육청(1) /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16)	경기도 가평군, 오산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1) / 강원도 교육청(1) / 강원도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3)	-
충북	충청북도(1) / 충청북도 교육청(1) / 충북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3)	-
충남	충청남도(1) / 충청남도 교육청(1) / 충남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8)	충남 홍성군(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1) / 전북 교육청(1) / 전북 전주시(1)	-
전남	전남 광양시, 무안군(2)	전남 여수시(1)
경북	경상북도(1) / 경상북도 교육청(1)	-
경남	-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1) / 제주도 교육청(1)	-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검색어 해당 조례 추출하여 연구진 작성

[표 2-7]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평생교육 지원 조례 규정 - 광역 지자체 사례(강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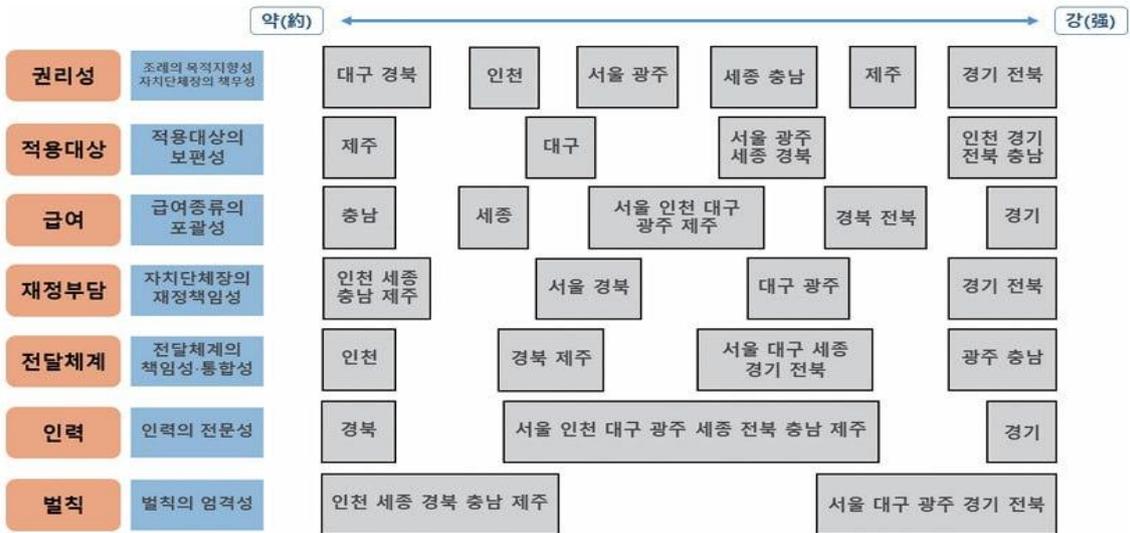
구분	지원조례 주요 내용	평생교육 지원조례 주요 내용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구분	지원조례 주요 내용	평생교육 지원조례 주요 내용
기본 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제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말한다. 제5조(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센터 운영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경제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경제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지원센터 연구진 제구성.

○ 지자체 행정 조직 담당 부서는 4개로 구분되며 교육(교육청소, 미래교육, 문화교육, 평생학습, 교육도서관, 시민교육, 평생교육) 43곳, 복지(복지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8곳, 아동(아동복지, 아동청소년, 아동복지, 청소년) 6곳, 가족(가족복지) 2곳으로 나누어져 있고, 일자리고용노동 유관 부서는 1곳도 없는 상황임.

[그림 2-3] 경제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비교 분석



* 자료 : 민기채(2023),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비교 연구」, GRI총서, 제25권 제4호, 경기연구원.

○ 경제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 분석 연구(민기채, 2023)에 따르면, 조례 내용이 체계적인지에 대한 정도를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종류, 포괄성), 재정부담, 전달체계, 인력, 벌칙 등으로 분류했을 때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조례 중에서는 경기

도 조례의 부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함.

- 권리성 구성요소는 경기와 전북, 적용대상은 인천, 경기, 전북, 충남이, 급여는 경기, 재정부담은 경기와 전북, 전달체계는 광주와 충남, 인력은 경기, 별칙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조례에서 높은 부합성

- 따라서 향후 지자체의 조례 개정 사항은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 미제정 지역에는 조례 제정 필요,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주민의 권리’ 조항 신설, 자치단체장 책무성 강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명시,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변경, 적용대상 보편화를 위해 일부 ‘발달장애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한 조항을 변경,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책임 있는 전달체계의 집행력 보장 등으로 제안

나. 정책 사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경계선 지능인 관련 최초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로 2023년 관련 종합계획⁴⁴⁾을 발표하면서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함.
- (정의)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71-84)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 (규모 추정) 서울 인구의 약 13.59%로 132만명 규모로 추정
- (종합계획)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적용(매 3년마다 수립),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과 체계적인 사회지원망 구축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목적으로 총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 제시
- (주요 분야) ① 경계선 지능인 발굴·지원 체계 구축, ②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및 자립 지원 기반 확충, ③ 경계선 지능인 연구 개발 기반 구축, ④ 경계선 지능인 지역사회 인식 전환
-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수행을 위해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mim 센터)’를 2022년에 설치, 경계선 지능인 발굴, 상담, 관련

44) 서울시 보도자료(2023.1.27.),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수립...체계적 사회지원망 구축”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개요) 2022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 총 10명(센터장 1, 직원 9)이 전용면적 약 100평 규모의 공간에서 사업 추진
- (대상 정의) 경계선 지능인이란 평균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표준화된 지능검사 DSM-IV(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기준 71-84점이거나 웨슬러 지능검사 70-79점에 해당하는 자로 느린 학습자로도 명명
- (주요사업) 평생교육사업, 자립지원사업, 연구기획사업 등

[표 2-8]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사업분야별 세부내용

사업 분야	세부 내용
평생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별 발굴 :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발굴 ◦평생교육 : 기초학습능력 및 일상생활기술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기초인지, 통섭예술, 문해력, 학습기술, 성인지 학습, 진로디자인, 한글ITQ 등 - (성인) 성인지학습, 정보검색, 문서작성, 그림, 운동(그룹PT) 등 ◦연계사업 : 전문영역의 기관, 지역별 연계를 통한 교육 ◦심리지원 : 정서발달과 심리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심리상담(개인 상담 및 심리치료), 비대면 상담(단회기 온라인, 전화 상담)
자립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역량 개발 : 직업준비교육, 직무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직업소양교육, 직무교육(바리스타, 데이터 라벨링, 직무훈련,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등) ◦자조모임 : 아동, 청소년, 청년 가족 대상 지지모임 ◦가족기능강화 : 가족교육, 가족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부모교육, 가족관계 증진 워크숍 등 ◦인식개선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홍보 ◦통합지원망 :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통합 지원망 구축
연구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사업 : 연구수행을 통한 기초자료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연수 :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역량강화교육 및 경계선 지능인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찾아가는 경계선 지능인 이해 교육

* 자료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나눔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연숙입니다.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일하는 시민연구소에서 “중장년 경계선지능인 노동실태 및 정책 연구 중간 공유회”를 열고,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 많은분들의 관심으로 느린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이 열리기를 소망해봅니다.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는 경계선지능(DSM-4 기준 71~84)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천천히 배우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 의학적·병리적 용어가 아닌 느린학습자로 명명하여 정의하고, 그들을 대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기조로 인하여 이하 경계선지능인을 느린학습자라고 명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느린학습자라고 정의하였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경계선 지능 관점으로 들여다보니 60 점대에 장애등록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학령기부터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능지수로 85점부터 89점도 고민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을 현장에서 만났고, 그렇다면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는 경계선지능의 고민과 어려움을 풀어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데 다른 사각지대를 버리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능지수가 아닌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다 품고 가고자 Slow Learners를 그대로 변한하여 느린학습자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지닌 집단들을 계속 만날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만든 단체가 사각지대를 더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품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는 느린학습자의 실존과 느린학습자의 고민과 어려움, 권리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느린학습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알고자 고충상담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실을 통해 들어오는 상담을 시작한 지 4년째로 2021년도에 시작한 상담에서 만난 38 39살의 청년이 현재는 42, 43이 되었습니다. 학령기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청장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제가 많이 알 수 없지만 그들과 상담하면서 또, 근래 들어오는 40대와 50대의 중장년 느린학습자의 상담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느린학습자 20~30대가 겪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으며, 4~50대가 되어 60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아픔에 노출되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며 말로 할 수 없고, 내 아이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살거라는 생각에 그저 제 가슴만 움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직장내 같은 직원들로부터, 종교 내 사람으로부터 너무 많은 아픈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학령기는 기초학력부터 다양한 지원이 조금이나마 열렸고, 청년들은 고용개발원, 서울시 민센터와 청년재단,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청년 숲 협동조합, 휘까페, 청년 문간 등 일자리 경험과 고용 등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40대 이후로는 그 어떠한 지원이 없기에 상담 전화가 와도 주민센터와 복지관 사례관리, 경찰서 연계가 그 한계였습니다.

간단하게 40대의 몇 사례만 전달하고자 하는데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담한 A 사례 (당시 38살)

생산직에 근무한 사례로 성실성에 의해 사무직으로 보직 발령 받았으나 사무실 내 적응의 어려움으로 입퇴사로 인한 어려움 호소

2022년 상담한 B 사례 (당시 39살)

과거에 경계선 진단받았으나 가족 내 수용받지 못하다가 정신장애로 등록하니 가족들이 수용하여 현재는 편하다고 함.

2023년 상담한 C 사례(당시 60세)

진단 경험 있는 느린학습자로 같이 살던 노모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집으로 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게 없어 복지관 연계함

2024년 상담한 D 사례(당사 55세)

본인도 당사자인데 당사자 양육하는 한부모 아버지로 23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급 받지 못하고 해고당하였는데 새로 일하는 버섯농장 근처 교회 식구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라고 하여 받았는데 분양금에 대한 고민 호소

일단 4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상담 전화 올 때마다 해줄 수 있는 자원의 한계로 인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느린학습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들이 소속하여 성취감과 효능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숙제처럼 몇 년째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중장년 느린학습자를 위한 노동연구를 하신다고 하니 너무 반갑다 못해 두 손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갑니다. 느린학습자들도 나이 들어갑니다. 40대, 50대, 60대가 되는 느린학습자들을 위해 전환기 교육을 꼭 부탁드립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전환기 교육을 통해 생애주기에 맞는 일상 생활 자립을 위한 생활 규범과 일자리 선배로서의 규범, 경제교육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의 지원을 통해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은평구만의 중장년 느린학습자를 위한 노동실태 연구가 잘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느린학습자의 삶을 응원합니다.

느린학습자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느린학습자의 이름으로 만드는 사회적 변화

나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신정미 복지사

경계선지능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 현황과 과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밈센터) 자립지원팀 신정미

목 차

- 1 현황
 -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
 - 경계선지능 청년들을 위한 준비와 연구
 - 종합대책 발표
- 2 직업교육 운영 현황
 - 밈센터 일경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3 자립지원 사업의 발전방안 제안



1 현 황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

2014

- EBS 교육방송, 교육부 및 경기도 교육청 주최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EBS '느린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2015~2016

- 초·중등교육법 개정
- '경계선 지능 학생' 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향상

2019

- 서울시의회
 - '학교 밖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



2020

- 8월 12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시의회 발의
- 9월 3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시의회 원안 가결
- 9월 15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시의회 의결
- 10월 5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1

- 3월 8일 - 9월 27일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응역 실시
- 9월 10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12월 22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

2022

- 2월 14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
- 4월 4일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우선협상자 :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
- 4월 25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위탁운영 (수탁법인 :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
- 5월 1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제1대 이교봉 센터장 부임
- 6월 22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소식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

2023~2024.05

- 경계선지능 관련 법률안 총 4개 발의
(임기만료 폐기)
- 제 6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 계획
- 경계선 지능인 등 법정 장애인은 아니나
직업생활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 취업지원
제공 방안 검토
- 제 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 현행 장애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 시각지체에 대한
교육/자립/고용/돌봄 통합적 지원방안 모색

2024.06~

-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 보유 총 83개 지방자치단체
- 경계선지능인 59개
- 느린학습자 24개
- 전국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참여자 중 4.6%)
- 7월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개소

범국가 차원의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24.07)



경제적·사회적 자립지원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 숙련도 향상을 위한 일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강화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 범죄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 **(취업역량 강화)** 경계선지능인의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연구사업 추진**^{고용부}

* 연구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타 청년 지원 정책 연계 및 시범사업 등 추진 검토

- **경계선지능인 대상 훈련 과정 설계, 대상자 모집 및 실적 관리** 등
 -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 추진

「'24년 경계선 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연구사업」

- 주관 : 서울시(임센터) + 청년지원센터(청년재단)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지원내용 : ①진로설계컨설팅(진로성숙도검사, 구직역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 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검사 등 활용), ②**직업훈련프로그램**, ③**일배움** 제공
 - 그 외 직무지도원 채용,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2

직업교육운영 현황

- 임센터 일경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직업교육 살펴보기

1. 바리스타 자격취득 과정

- 자격 취득 직무교육(SCA 자격증), 휘카페 현장실습, 인턴십



자격 취득 직무교육



휘카페 현장실습



국제공인자격 취득

2023년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직업교육 살펴보기

2. 데이터라벨링

- 데이터라벨링 교육, 모의 실습, 1:1 컨설팅

● 활동사진



2기 교육 및 실습



정서지원활동



1기 수료식

2023년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직업교육 살펴보기

3. 디자인아트

- 주제별 디자인, 아트상품 제작 및 판매



2023년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직업교육 살펴보기

4. 스마트팜 쿠킹

- 수경재배 채소를 활용한 샐러드, 디저트, 음료 제조와 이론교육 실시
-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 샐러드 카페 실습



경계선지능 청년들을 위한 준비와 연구(20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 결과)

1 경계선 지능인 특성

- 단순히 지능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이질적인 특성]
-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초 학습 부족 등 [낮은 지능으로 인한 제한]
- 사회성과 공감 능력 부족, 높은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지지 욕구로부터 기인하는 [사회적응 능력 부족]
- 업무이해 및 이행 능력 부족 등 발달장애와 비장애인 사이의 [직업적 역량]

2 고용지원 실태 및 어려움

- 높은 취업의 장벽, 버티기 힘든 직장생활, **바리스타로 제한된 취업직군**, 비전이 보이지 않는 단기 일자리를 전전해야하는 [취업과 고용유지 단계에서 직면하는 한계]
- **장애등특이 아니면 전무하고, 성인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지원의 공백]**
- [부모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힘
- **경계선 지능 특성이 반영된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시스템의 부재]**

3 고용서비스 지원 요구

-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
- 조기 진단으로 인한 개입, 진로탐색 등의 진로상담, **맞춤형 교육과 정과 교육훈련 제공,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훈련 등 [진로교육, 직업훈련] 필요
- 적합한 직무 및 직군 개발, 취업지원 모델 개발, 사업주 인센티브 지급 고려, 보호자와 관리자 교육 등 [고용환경 구축] 노력 필요
- 심리상담 및 멘토링 지원, 약물복용 관련 의료지원, **취업 후 적응 지도를 위한 잡코치 배치** 등 [고용유지 지원] 필요

2024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

**3개 기관과 함께 경계가 없는 교육을 만들어 갑니다!
청년의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과 실습 운영!**



-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정책토론회(23.11.24.) 「경계선지능인 자립, 취업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인큐베이팅 지원모델 시도
- 2023년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토론회(23.12.15.)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을 통한 시범사업 초석 마련

2024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

임센터, 고용개발원, 청년재단 업무협약(24.02.23)를 통한 경계선지능인의 일 역량 강화 및 일 경험 지원 시범사업 협력

1과정	인원 50명	2과정	인원 30명	3과정	인원 1차 6명, 2차 13명
맞춤형 진로 설계 (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업무역량 강화 (직업교육 프로그램)		일경험 연계 (인턴 프로그램)	

- (맞춤형 진로 설계) 고용 컨설팅을 통해 진로성숙·직업흥미, 구직욕구,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 취업 매칭을 위한 여건 조성
- (일 역량 강화) 경계선지능 청년 등 실무형 직업 훈련 시행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 (일 경험 연계) 현장 중심의 직무조정 등 맞춤형 일 경험을 통해 취업으로의 연계 가능성 탐색



2차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내용 요약:

- 주제:** "구직을 희망하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1차 컨설팅과 전문교육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대한민국 거주 경계선지능 청년 50명
- 사업내용:** 진로컨설팅, 직업교육, 인턴십
- 모집기간:** 24. 5. 8.(수)~24. 5. 14(화) * 선착순 마감
- 2차 시범사업 신청 조건을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 1단계 진로컨설팅 참여 시 필수서류 제출 가능할 경우
 - 1. 동본 구직신청서(원사지 또는 복수서 제출 가능) (신청서 작성 시 결과지(경계선 지능 지수 확인)
 - 2.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1차, 2차에 부가 참여인원 축소)
 - * 1차 시범사업 신청자와 중복등록 확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24. 5. 17.(금) 신청자 대상 컨설팅 안내 문자를 발송드립니다
- 운영기간:** 24. 5. 20.(월)~24. 9. 13.(화), 총 4개월 과정
- * 모든 과정 참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 과일별 직무 적합성 등을 확인한 후 참여인원 조정
- 문의:** 서울에 사는 청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자립지원팀 ☎070-8905-9052
- 서울 이외 지역에 사는 청년: 청년재단 정책기획팀 ☎02-6731-2622, 2606

2024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1차 사업 기준)

과정명	인원	교육 내용	
진로 컨설팅 (1과정)	50명	기간	2024. 04. 01.(월) ~ 04. 12.(금) 중 2일 진단 1일, 해석 1일
		장소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서울 중구),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실시 내용	(진단) 구직욕구진단검사,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진로 성숙도검사 등 활용 (해석) 임상심리사를 통해 전화/이메일/대면 방법으로 진단 결과설명 및 상담 진행

2024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1차 사업 기준)



▶ 진로컨설팅 검사 도구



▶ 임상심리사와 1:1 검사와 결과해석 진행

2024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 (1차 사업 기준)

과정명	인원	교육 내용
직업 교육 (2과정)	30명	기간
		장소
		실시 내용

2024. 04. 15.(월) ~ 05. 09.(금) 중
매주 화/목 09:30~12:30(3H)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1) 소양교육(4주) : 대인관계, 시간관리, 의사표현, 자기관리, 안전교육, 직업생활, 직업윤리, 금융교육
2) 공통직무(2주) : 디지털 업무 기본 교육(OA, AI)
3) 개별직무(2주) : 3개 업체별 맞춤형 직무교육 (디자인이해, 디지털협업툴, SNS콘텐츠)

2024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1차 사업 기준)



▶ 직업윤리 교육,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살펴보기



▶ 서비스 직무 준비를 위한 인사법 교육

2024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 (1차 사업 기준)

일경험 (3과정)	근무기간	근무장소	혜택
직업교육 참여자 중 6명 선발	2024. 06. 17.(월) ~ 07. 19.(금)(5주간)	A업체(경기 군포) B업체(서울 마포)	일경험 참여수당 지급
* 직무지도원을 함께 배치	1일 3시간, 주 5일 출근	C업체(서울방배)	* 5주 기준 90만원

2024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1차 사업 기준)



▶ 주문 고객을 위한 포장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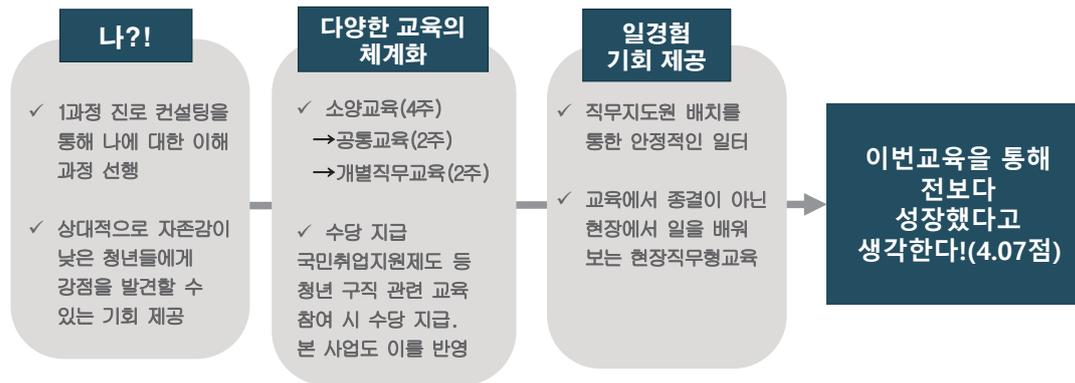


▶ 자재관리를 위한 엑셀 작업

3

자립지원 사업의 발전방안 제안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의 성과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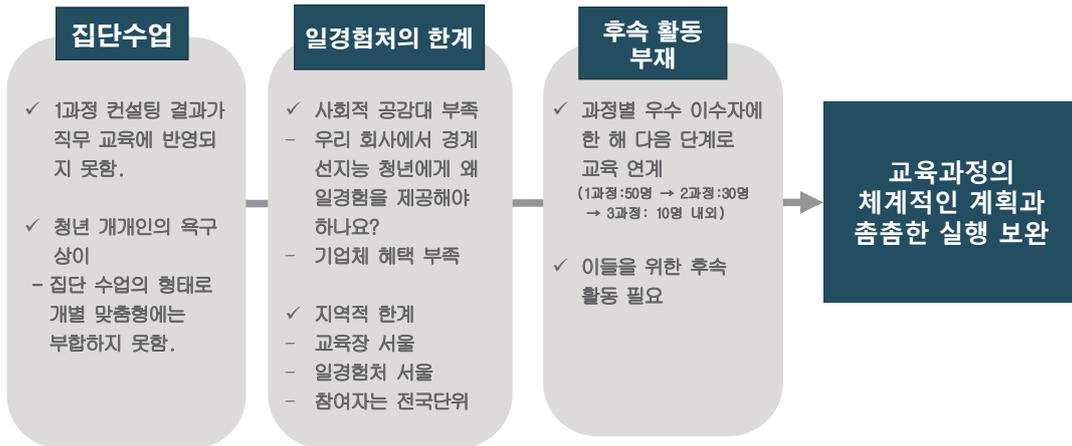


“이번 인턴 경험 덕분에 성격이 많이 활발해진 것 같고, 좀 수다쟁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감정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었고, 동료와 함께하는 협동의 즐거움도 배웠어요.

또 다들 많이 신경 써주셔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땐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어요.”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사업의 한계



향후 발전 방향

1. 거점 지역별 교육 기관 운영(시범 사업의 결과를 매뉴얼로 제시)
 - 이를 통해 청년 참여자와 기업체 매칭 시 지역 기반 반영
2. 집합교육과 개별교육의 적절한 배치
 - 진로성숙도 검사 시 진로태도, 진로능력, 진로행동으로 검사 결과가 제시.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주요하게 낮은 항목이 진로행동검사. 이에 정보 탐색 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을 높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1:1 진로 컨설팅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3. 일경험의 경우 이미 특성화된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매칭전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 강화
4. 일경험 및 구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체 유인책(인센티브, 세금감면, 일경험 연장을 통한 고용여부의 판단 가능성 확대 등) 마련 필요

"청년 여러분은 작은 보리 한 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는 진심을 담은 분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눔

은평구립 우리장애인의복지관

박선영 팀장



다사다난하고 바쁜 2024년의 연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년
중장년 경계선지능인 노동실태 및 정책연구
결과 공유에도 함께해주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2024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장년 경계선지능인 노동실태 및 정책연구 중간공유회



12.17 (화)
pm 3:00



서울시50+
서부캠퍼스
4층 두루두루강당

OD